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학대 신고자의무자 확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확대 등〉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50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I. 개요

1.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5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7. 17.
- (3) 회 부 일 : 2024. 7.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장애인학대 등에 대한 신고의무 및 장애인에 대한 각종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상해, 횡령, 사기 등 장애인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186건으로 2018년 처음 집계한 889건 대비 33.4%가 증가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와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도 각각 35.5%, 43.9% 증가한 4,958건과 2,641건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학대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고착화됨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학대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는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의 설치를 확충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학대
예방·방지 의무를 규정한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
학대를 근절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장애인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시·도 별로 1개소 이상 두도록 하며,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 제59조의11제2항 및 제59조의20).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략)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 ----- -----.
1. ~ 22. (생략)	1. ~ 22. (현행과 같음)
<u><신설></u>	23.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에 소속된 자
<u><신설></u>	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 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u><신설></u>	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③ ~ ⑧ (생략)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 6. (생략)

③·④ (생략)

<신설>

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역별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둔다.

1. ~ 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0(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① 범국민적으로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 포함된 1주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u>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	---

2. 검토의견

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¹⁾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1)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요원은 제외한다.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①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에 소속된 자,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③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직무지도원 및 근로지원인 등 장애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포함하여 장애인학대사건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①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거주시설 내 설치·운영되고 있음.²⁾

< 인권지킴이단 현황 >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	783	85	30	22	27	29	41	18	4	169	43	43	41	49	44	73	44	21
단원수	4,489	457	165	114	164	160	226	103	20	1045	261	220	231	286	252	397	262	126

자료: 보건복지부, 2023.12. 기준

- 다만,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시설의 운영자가 위촉하여 구성하게 되는바,³⁾ 이들이 신고의무자가 될 경우, 관련 교육 이수 의무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권지킴이단 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2)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④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권지킴이단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 운영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법정대리인등
2. 해당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시설 운영자 및 해당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3.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측면이 존재함.4)

- ②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5)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뜻하며, 시장·군수가 운영주체로 전국에 4,714명의 운전자가 이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별교통수단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19).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 및 개선 방안, 입법·정책보고서 제35호.

< 특별교통수단 운행기관 및 운전자 현황 >

구분	운행기관 수	운전자 수(명)
서울시	1	793
부산시	1	169

-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대구시	1	178
인천시	1	194
광주시	1	124
대전시	1	116
울산시	1	78
세종시	1	25
경기도	31	1,298
강원도	18	209
충북도	11	147
충남도	15	184
전북도	14	225
전남도	22	238
경북도	23	212
경남도	18	438
제주도	1	86
합계	161	4,714

주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기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임.

자료: 국토교통부, 2022.12. 기준

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해 운영주체인 시장·군수가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수탁기관의 장도 신고의무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③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으로,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고,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장애

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음.⁶⁾

- 2023년 12월 기준으로 총 694개의 표준사업장에서 27,610명의 비장애인 및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음.

<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현황 >

(단위: 개소, 명)

구분	인증 사업장	비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고용인원
합계	694	11,517	16,093
자회사형 ¹⁾	543	3,624	7,239
일반 ²⁾	150	7,893	5,649

주1): 자회사형은 모회사가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2): 일반형은 모회사가 없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료: 보건복지부, 2023.12. 기준

- 또한 중증장애인의 취업 전·후,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출·퇴근, 작업기술, 대인관계기술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선임·배치된 직무지도원⁷⁾과 중증장애인의 직장 내 이동 및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지원인⁸⁾은 현재 각각 1,486명과 11,826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음.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지원고용)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직무지도원”이란 지원고용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출근·퇴근, 작업기술, 대인관계기술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선임·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근로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직무지도원 및 근로지원인 현황 >

(단위: 개소, 명)

구분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배치사업장	1,028	3,909
배치 인원	1,486	11,826

자료: 고용노동부, 2024.6. 기준

- 다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직무지도원 및 근로지원인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들에게 신고의무 부과 시 사업장별 관련 교육 수강 및 결과 제출 등의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기준 추가 및 설치 확대

□ 장애인학대 사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학대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⁹⁾에 따라 2018년부터 장애인학대

9)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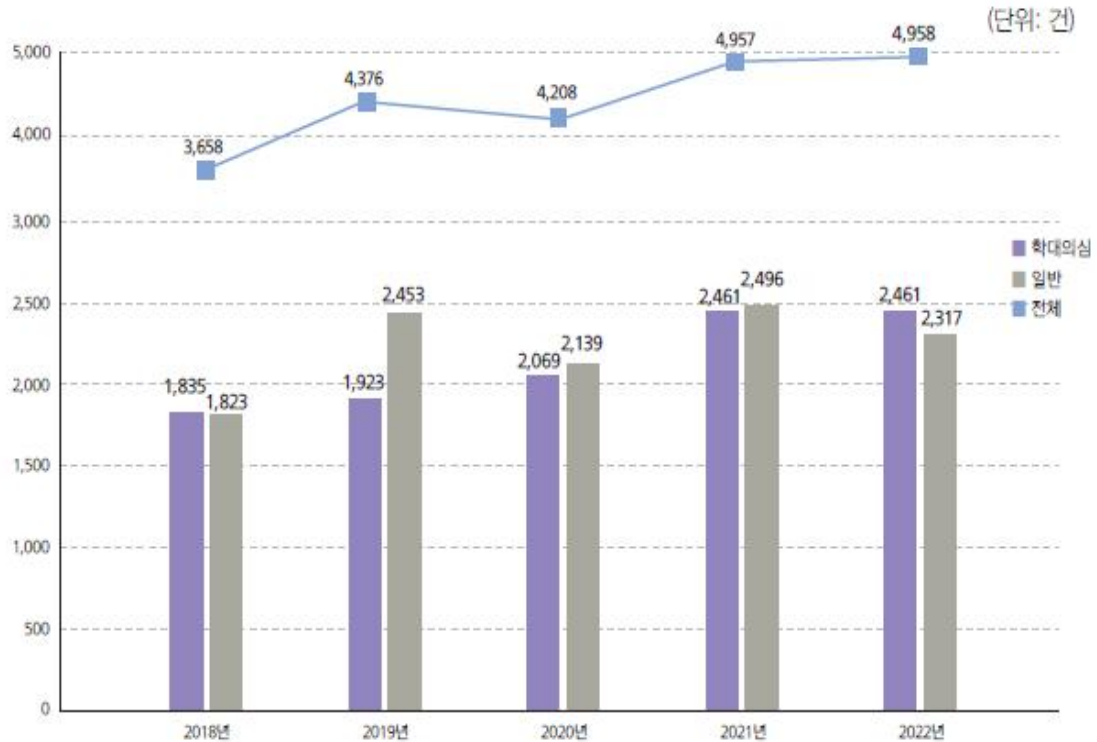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관리위원회 설치·운영
5.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신고접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자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앙 1개소와 지역 1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중앙의 경우는 주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의 거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의 경우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조사, 응급보호, 사후관리 등의 장애인학대 대응 현장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

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및 운영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기관명	개소일	종사자 인원	예산(국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 2.27.	6	493.8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8. 1. 1.	15	128.8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0.12.	5	128.8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2.15.	7	128.8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 8.24.	8	128.8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0.17.	7	128.8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 8.31.	5	128.8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8. 1.23.	7	128.8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2.22.	4	128.8
경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2.15.	15	128.8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1. 1.	11	128.8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2.15.	7	128.8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1.22.	6	128.8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12. 9.	5	128.8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0. 1.	5	128.8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2. 6.	6	128.8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2.14.	7	128.8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12.21.	11	128.8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 9.27.	5	128.8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8. 3.14.	8	128.8

주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국비100%,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국비50%, 지방비(광역 시도)50%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주2): 지역별로 종사자 인원이 상이한 이유는 국고보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광역 시도)의 자체예산 지원으로 상담조사 인력(상담원)을 추가 채용했기 때문임.

주3): 충청북도와 경기도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추가 설치하여 운영 중

자료: 보건복지부, 2024. 기준

□ 개정안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역별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을 고려하여 1개 이상 두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별 편차는 다음에서 보듯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임.

①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 인구가 약 58만명인데 비해, 세종특별자치시는 약 1만 2천명으로 지역별 장애인 수에 상당한 편차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학대의심 사례 건수도 각각 569건과 62건으로 차이가 있음(참고자료 1: 장애인 수 대비 지역 및 기관별 학대의심 사례 현황).

②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 1명의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도 많게는 587회(대전광역시)에서 적게는 157.5회(대구광역시)로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참고자료 2: 지역 및 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 현황).

③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다.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

- 개정안은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 포함된 1주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주간으로 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6월 22일로 정한 이유는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인화학교 학생 성폭력 피해 최초 상담이 이루어졌던 2005년 6월 22일¹⁰⁾과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근거¹¹⁾가 마련된 날(2015년 6월 22일)을 기념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 현재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기념일로 「노인복지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지정되어 있음.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 삭제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

10) 이 사건은 후에 ‘도가니’라는 제목으로 소설 및 영화화되어 널리 알려짐.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참고로,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의 지정과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크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등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 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 나.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 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
 - 라.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 마.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신고의무자 확대 관련

- 법안 취지에 동의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관련

- 법안 취지에 동의
- 다만, “지역별”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 광역지자체와 같이 구체적인 행정구역기준 명기 필요

☐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 관련

- 법안 취지에 동의

나. 고용노동부

□ (표준사업장 및 직무지도원 신고의무자 포함: 불수용)

-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등을 통해 보호받고 있음

※ 제78조 위반시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제76조의3위반 시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 표준사업장 및 기타 장애인고용사업장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사업장)으로, 동 법규정의 적용을 받는 다른 기관*과 성격이 상이하며, 표준사업장 사업주·근로자, 직무지도원에게 신고의무 부과 시 사업 참여사업장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담, 관련 교육 실시 후 결과 제출** 등 부담이 발생해 타 장애인 고용사업장과의 형평성 저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육기관 종사자, 각종 상담소의 종사자 등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운영하거나 자격 면허를 받아 종사하며 국가로부터 관리 및 운영지원을 받는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참고로,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도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으며, 장애인 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표준사업장에서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과정에도 장애인 인권 관

련 과목을 의무 이수토록 함

□ (근로지원인 신고의무자 포함: 신중검토)

- 근로지원인에게 신고의무 부과 시, 미이행 과태료뿐 아니라 근로지원인 당사자의 교육 수강 의무 및 근로지원인 배치 수행기관의 교육실시·교육결과 보고 의무 등이 발생하여 업무 부담 증가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지원인 당사자 및 수행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중검토 필요

다. 국토교통부

□ 개정안에 따르면 학대 등의 신고 의무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로 정하고 있는데,

□ 현행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이동지원센터 업무를 위탁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탁기관의 장을 학대 등의 신고 의무 주체로 포함할 필요

* 교통약자법 제16조제12항 및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신청 접수 등은 이동지원센터에서 수행

제(개)정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검토사유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위와 같음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22. (현행과 같음) 23.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에 소속된 자 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u>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u>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22. (현행과 같음) 23.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에 소속된 자 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u>기관의 장(법제16조제1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과 그 운전자</u>	
--	--	--

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신고의무자 확대 관련

- 장애인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등을 위해 장애인을 상시적으로 만나거나 자주 만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직군과 관련하여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 신고의무자 확대와 관련해서 신설되는 직군이 있을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기 보다는 포괄적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신고의무자의 확대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장애인학대 신고 및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개발,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한 예산확보와 적극적인 실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확충 관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역 내 설치 현황 및 피해장애인의 접근성은 장애인학대대응의 필수요소임.
-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7개 시도에 19곳이 설치되어 있지만, 특히 도서 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조사 및 지원조차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지역별 등록장애인수 대비 균등하게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피해장애인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임.
- 더불어 전문적인 인력지원과 예산이 마련되어야 피해장애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 관련

- 장애인 학대는 점차 증가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장애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제정이 필요함.
- 단,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 선언적인 지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홍보를 위한 정기적인 기념행사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

마.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인권지킴이단 단원을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함.

- 다만, 인권지킴이단은 단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추천하는 ①~⑥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 운영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 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법정대리인 등, ② 해당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 (시설 운영자 및 해당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③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④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⑥ 그밖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단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중 ②와 ⑤는 제59조의4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미 신고 의무 대상자이며, 나머지 인권지킴이단 단원은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와 비교하였을 때 인권지킴이단 단원이 직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신고 의무자가 될 경우 교육 등의 부담으로 인권지킴이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아울러 인권지킴이단은 현재도 인권침해 의심 상황을 확인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지침에 의해 부여되고 있는 점 고려 필요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인 수 대비 지역 및 기관별 학대의심 사례 현황〉

(단위 : 명, 건)

구분		장애인 수	학대의심 사례
서울		390,997	204
부산		176,069	181
대구		127,439	154
인천		150,892	117
광주		69,454	70
대전		71,915	99
울산		51,402	151
세종		12,848	62
경기	경기남부	416,315	314
	경기북부	167,467	255
	소계	583,782	569
강원		101,622	125
충북	충북	71,450	188
	충북북부	26,412	-
	소계	97,862	188
충남		134,698	136
전북		131,652	92
전남		138,410	123
경북		182,373	144
경남		189,874	144
제주		37,134	82
계		2,648,423	2,641

주1): 2024년 7월 현재 경기도와 충청북도는 각각 2개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경기, 경기북부, 충북, 충북북부)이 설치되어 있으며, 충북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은 2022년 12월 설치되어 2023년 3월부터 업무수행

자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12.기준

〈참고자료 2: 지역 및 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 현황〉

(단위 : 명, 건, 회)

구분	학대의심 사례	상담원	상담원 1명 평균담당사 례	상담 및 지원횟수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
서울	204	9	27.3	2,155	239.4
부산	181	2	106.5	775	387.5
대구	154	4	44.5	630	157.5
인천	117	5	32.0	1,146	229.2
광주	70	4	22.8	1,053	263.3
대전	99	2	67.0	1,174	587.0
울산	151	4	44.3	1,070	267.5
세종	62	2	41.0	545	272.5
경기	경기남부	314	8	2,603	325.4
	경기북부	255	6	2,537	422.8
	소계	569	14	5,140	367.1
강원	125	4	45.0	1,755	438.8
충북	충북	188	3	1,343	447.7
	충북북부	-	-	-	-
	소계	188	3	1,343	447.7
충남	136	3	59.7	812	270.7
전북	92	4	33.3	1,055	263.8
전남	123	6	37.7	1,618	269.7
경북	144	2	93.5	548	274.0
경남	144	5	42.4	1,189	237.8
제주	82	3	30.3	718	239.3
계	2,641	76	44.3	22,726	299.0

주1): 2022년 12월말 기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76명임. 지역별로 상담원 수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국고보조금 이외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예산을 지원하여 상담원을 추가로 채용 때문임.

자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